

## '23년 3/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세부 추진상황

【'23.9.30. 기준】

연 번	회기	안 건 명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경과
1	제81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대령 제도 정비, 승진제도 개선		제도 정비, 승진제도 개선, 임용제도 현행화 등 공직 내외의 성과중심 인사환경 변화를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실	법제처 심사
2	(7.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해경학과·해수산계고교 경력채용 제도 정비, 경력채용 응시연령 확대, 채용점검위원회 규정 신설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인력풀을 넓히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임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실	법제처 심사
3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ul><li>. 방첩업무 관련 절차를 실정에 맞게 정비</li><li>. 해외 근무직원에 대한 방첩교육규정 신설</li><li>. 본 훈령의 재검토기한 재설정(3년) 등</li></ul>	수정 의결	외사과	23.8.10. 발령
4	제 <b>82호</b> (8.7.)	「밀항사범처리규칙」전부개정안	예규	·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 ※ 밀항사범, 재외 밀항사범, 송환자 · 밀항 대응 대책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 · 관할, 이송, 조사 등 조항 명확화 · 본 예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3년) 등	수정 의결	외사과	23.8.10. 발령

연 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경과
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안	대령	· 권역별 관제망 구축을 위한 제주광역VTS 신설 · '23년도 정기직제 결과 반영 ※ 증톤대체 노후함정 인력 15명 증원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3.9.12. 공포
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령	<ul> <li>운영지원과「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무 추가</li> <li>총액인건비제 운영한도 상향</li> <li>※ 총 정원의 7%→10% 범위 내에서 증원 可</li> </ul>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23.9.12. 공포
7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한	· 행안부·인사처 법령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 규정을 '법령'에서 '훈령'으로 이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인사운영 규칙」(훈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3.9.12. 발령
8	제83호 (8.21.)		고시	· 광역VTS 정상운영*을 위한 관제운영절차 마련 * 시범운영 종료 및 정상운영 시행(9.1.) · VTS경계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관제구역 확대 ※ 인천항, 완도항, 여수항 관제구역 확대 (3개소)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3.9.1. 발령
9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	<ul> <li>광역VTS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정 규정 신설</li> <li>※ 관제운영팀 등 4개팀 구성 및 업무 지정</li> <li>상황전파체계를 '해양경찰서'로 일원화</li> <li>※ (현행)지방청·해경서에 전파 → (개정)해경서에 전파</li> </ul>	수정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3.9.1. 발령
10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고시	<ul> <li>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선박패스 설치대상에 관한 근거법령을 「어선법」으로 변경</li> <li>※ (현행)「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어선법」</li> <li>수집된 어선운항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강화</li> <li>※ '제3자 제공금지'에 관한 문구 추가</li> </ul>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23.8.30. 발령

연 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경과
11	-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 공동대응 요청 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의무화 ※(현행)'조치를 취하고'→(개정)'현장 출동하여 확인하고'	원안 의결	종합상황실	23.9.27. 발령
12	<b>제84호</b> (9.4.)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예규	<ul> <li>'상황대책탐'을 법규 등에 근거한 '대책본부'로 규정</li> <li>상황실 임무를 지휘관의 '지휘' 개념과 구분 ※ (개정) 상황실의 임무에 '관리 및 조정' 개념을 추가 명시</li> <li>복무규정을 관계 행정규칙*에 따르도록 개정 *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훈령)</li> </ul>	수정 의결	종합상황실	23.9.27. 발령
13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훈령	<ul> <li>'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경력 기준 상향 ※ 전문수사관 3년→5년, 전문수사관 마스터 7년→10년</li> <li>전문수사관 선발에 대한 일부권한 지방청 위임 ※ (현행 본청 통합선발 → (개정) 지방청 1차 실적 평가 및 추천</li> <li>전문수사관 인증분야 확대 및 실적기준 상향 ※ 인증분야 17—22개 실적〉준재산범죄송치(20—50건) 등 10개분야</li> </ul>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23.9.13. 발령
14	<b>제85호</b> (9.18.)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ul> <li>서장 보직군(1·2군) 신설*, 보직기준 마련**         * (1군)인천・목포・부산・동해・제주서장, (2군) 그 외 서         ** (1군) 총경으로 서장 유경험자 또는 상황부서 1년         이상 근무자, (2군) 총경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li> <li>본청 경정 전입기준 완화*,연속 근무기간 조정**         * (기존) 경사~경감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 →         (변경) 경위 이상으로 지방청 4년 이상 근무자도 가능         ** (기존) 연속근무 6년까지 가능 → (변경) 5년까지로 단축</li> </ul>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실	23.10.11. 발령

연 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소관부서	진행경과
15		「해양경찰 표창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ul> <li>소속기관 표창권자 개정* 및 표창장 서식 개선</li> <li>* (연구센터장) 표창권자에 추가, (함장) 기존 '250톤급'</li> <li>이상 함장 → '1천톤급' 이상 함장으로 변경</li> </ul>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3.10.11. 발령
16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 위촉심의 절차 구체화* 및 승진위촉 근거조항 마련 * 소속기관 자체위촉 시 청장보고 조항 신설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실	23.10.11. 발령
17	제85회			전담 직무대리 지정 사유 확대* * (기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진후보자에게 지정 (변경) 청장이 직무공백 방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추가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3.10.11. 발령
18	(9.18.)			·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 방식 정비 ※ 본청과 중특단이 명부를 분리 작성 가능하도록 변경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실	23.10.11. 발령
19		「해양경찰수사규칙」일부개정안	부령	・ '수사준칙' 개정에 따른 고소·고발 접수절차 개선 ※ △고소·고발은 모든 건을 접수하도록 반려제도 폐지, △접수 후 각하사유 확대(혐의 확인 자료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부처협의
20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미제출, 수사 필요성 없음 등), △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본인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 불가시, 이중고소·고발시), △ 각하 대상 사건 검토절차 신설(수리일로부터 2개월 內) 등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10월 2주 중 발령예정